

속초시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의안 번호	398
----------	-----

제출년월일 : 2008. 12. .

제출자 : 속초시장

1. 제안이유

- 초고유가 시대의 에너지절약 대안으로 자전거의 중요성이 대두됨에 따라 자전거이용 활성화를 유도하고,
- 주민의 건강증진과 에너지절약 생활화는 물론 친환경도시조성에 기여하고,
- 자전거이용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본 조례를 제정하고자함.

2. 주요내용

가. 시장의 책무 등(안 제3조)

- 1) 자전거이용 여건의 개선과 안전성 확보
- 2) 자전거이용시설의 설치·유지·관리
- 3) 자전거이용의 시민참여와 협력
- 4) 자전거이용 시책개발 및 홍보

나. 시민의 권리와 책무(안 제4조)

- 1) 안전하고 편리하게 자전거를 이용할 권리
- 2) 자전거이용 여건 개선시책의 수립과 추진에 관하여 알 권리
- 3) 자전거이용의 활성화 시책에 참여하고 협력할 책무

다. 재정지원(안 제6조)

- 1) 자전거이용 활성화를 위한 시책 추진에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

라. 자전거 주차요금(안 제10조)

- 1) 안 제7조에 따라 설치된 자전거주차장의 주차요금은 무료로 한다.

마. 자전거주차장의 운영방법 등(안 제11조)

- 1) 주차 후 동일 장소에 무단으로 10일 이상 방치된 자전거에 대하여는 법 제20조에 따른 조치를 이행할 수 있다.

바. 양심자전거의 운영(안 제12조)

- 1) 자전거이용 활성화와 교통편의를 위하여 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양심자전거를 운영할 수 있다.

3. 참고사항

가. 근거법령 :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나. 예산조치 : 2009에 당초예산 반영

다. 기 타

- 1) 입법예고 : 10. 14 ~ 10. 27
- 2) 입법예고결과 : 의견없음
- 3) 규제심사결과 : 해당없음

붙임 : 1. 속초시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1부.

2. 근거법령 요약문 1부. 끝.

속초시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및 같은법 시행령(이하 “령”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자전거 이용을 활성화함으로써 시민의 건강증진과 에너지절약 생활화는 물론 친환경 및 건강도시 조성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자전거이용시설”이라 함은 자전거도로·자전거주차장 그 밖에 자전거(원동기를 장치한 것 및 장애인용 의자차를 제외한다. 이하같다)의 이용과 관련 되는 시설로서 영 제2조의 규정에서 정한 시설을 말한다.
2. “자전거주차장”이라 함은 자전거 주차 장치를 설치하고 자전거의 주차를 위하여 일반의 이용에 제공되는 장소를 말한다.
3. “자전거정비소”라 함은 자전거의 이상 유·무를 보살피고 고장난 부분을 수리하는 곳을 말한다.
4. “양심자전거”라 함은 속초시 관내에 거주하는 시민이 이용할 수 있도록 대여하는 속초시 소유의 자전거를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시장은 자전거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1. 자전거이용 여건의 개선과 안전성 확보에 관한 사항
2. 자전거이용시설의 설치·유지·관리에 관한 사항
3. 자전거이용의 시민참여와 협력에 관한 사항
4. 자전거이용 시책개발 및 홍보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사항

제4조(시민의 권리와 책무) 모든 시민은 다음 각 호의 권리와 책무를 진다.

1. 안전하고 편리하게 자전거를 이용할 권리
2. 자전거이용 여건 개선시책의 수립과 추진에 관하여 알 권리
3. 자전거이용의 활성화 시책에 참여하고 협력할 책무

제5조(정비계획의 수립) ① 시장은 법 제5조의 규정에 따라 자전거이용시설의 정비계획(이하 “정비계획”이라 한다)을 5년 주기로 수립하고, 매년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정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자전거이용시설 정비의 기본방향
2. 자전거이용시설 기초자료 조사 및 분석
3. 자전거이용시설 지표 및 활성화 계획
4. 자전거이용시설의 연도별 정비계획
5. 사업시행에 소요되는 비용의 산정 및 재원조달 방안
6. 자전거이용시설의 운영 및 유지관리 방안
7. 그 밖에 자전거이용 여건의 개선에 필요한 사항

③ 시장은 정비계획을 수립하고자 할 경우에는 주민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시민단체 또는 관련전문가 등의 자문을 받을 수 있다.

④ 시장은 도시계획 또는 교통계획 등 자전거이용 여건과 관련이 있는 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할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정비계획을 반영하여야 한다.

제6조(재정지원) 시장은 자전거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7조(자전거주차장의 설치) ① 시장은 법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자전거주차장을 설치하여야 하는 노외주차장 및 대중이 이용하는 공공시설물에는 자전거주차장을 설치하여야 한다.

② 법 제11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시설물을 건축 또는 설치하고자 하는 사람 및 주택단지 또는 대형유통시설 등의 사업주체에 대하여 자동차 주차대수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자전거 주차대수를 수용할 수 있는 자전거주차장 및 자전거보관대의 설치를 권장할 수 있다.

③ 시내버스정류장, 버스터미널 등 연계교통 환승지점에 자전거주차장을 설치할 수 있다.

제8조(자전거주차장의 설치기준) 제7조의 규정에 따른 자전거주차장의 설치 기준은 「자전거이용시설의 구조·시설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른다.

제9조(자전거주차장의 유지·관리) ① 자전거주차장은 당해 자전거주차장을 설치한 자가 관리한다.

② 시장은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자전거주차장을 설치한 경우 그 관리를 자전거주차장이 설치되어 있는 지역의 동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③ 자전거주차장 관리자는 법령 및 조례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의 의무를 다하여 자전거주차장을 관리·운영하여야 한다.

제10조(자전거 주차요금)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설치된 자전거주차장의 주차 요금은 무료로 한다.

제11조(자전거주차장의 운영방법 등) ① 자전거주차장의 설치·관리자는 법 제22조의 규정에 따라 등록된 자전거에 대하여는 자전거주차장에 우선적으로 주차가 될 수 있도록 배려 하여야 한다.

② 자전거주차장의 설치·관리자는 주차 후 10일 이상 동일장소에 무단으로 방치된 자전거에 대하여는 법 제20조의 규정에 따라 처분하되, 사용이 가능한 자전거는 양심자전거로 활용 할 수 있다.

제12조(양심자전거의 운영) 시장은 자전거이용 활성화와 교통편의를 위하여 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양심자전거를 운영할 수 있다.

제13조(자전거이용의 날 지정·운영) 시장은 자전거이용의 활성화를 위한 적극적인 주민참여와 홍보를 도모하기 위하여 자전거이용의 날을 지정·운영 할 수 있다.

제14조(자전거교통안전 체험교육장의 설치·운영) ① 시장은 자전거를 이용하는 학생 및 시민을 대상으로 올바른 자전거이용에 필요한 교육을 실시하기 위하여 자전거 교통안전 체험교육장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민간단체 등 시장 이외의 자가 자전거 교통안전 체험교육장 및 자전거 정비소 등의 시설을 설치·운영하고자 할 경우에는 그 시설에 소요되는 비용을 예산의 범위 안에서 보조할 수 있다.

제15조(시범기관 및 지역 지정·운영) ① 시장은 자전거타기 생활화를 위하여 시범지역을 지정하거나 공공기관, 민간기업, 학교 등을 시범기관으로 지정·운영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자전거 시범학교로 지정한 경우 학생들이 주로 이용하는 통학로에 대하여는 교통안전표지판, 안전시설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지정된 시범지역내 주민 또는 시범기관의 근로자, 학생들이 통근·통학시 자전거타기에 숙선수범하도록 권장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시범지역·시범기관의 자전거타기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행정·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6조(관리·운영의 위탁) ① 시장은 법령 또는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한 자전거이용시설의 관리·운영을 동 시설이 설치되어 있는 지역의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참여하는 비영리 법인·단체 또는 민간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자전거이용 활성화 시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수탁자로 하여금 시설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관계서류 등을 조사·검사하게 할 수 있다.

제1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근거 법령 요약문

□ 법 률

제5조(자전거이용시설 정비계획의 수립)① 특별시장·광역시장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지방경찰청장의 의견을 들어 자전거이용시설의 정비계획(이하 "정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하며, 시장·군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경찰서장의 의견을 들어 정비계획을 수립하여 도지사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정비계획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정비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이 경우 정비계획중 도시계획과 관련된 사항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1. 자전거이용시설 정비의 기본방향
2. 연도별 정비계획
3. 자전거이용자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방안
4.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③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시장·군수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비계획을 수립함에 있어 인접 지방자치단체의 자전거도로와 연계의 필요성이 있을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인접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협의하여야 하며, 시장·군수가 읍·면 지역의 국토·지방도에 정비계획을 수립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해당 도로관리청과 협의하여야 한다.

④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시장·광역시장이 수립한 정비계획을 행정안전부장관이 승인하고자 할 때에는 국토해양부장관 등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하여야 하고, 시장·군수가 수립한 정비계획을 도지사가 승인하고자 할 때에는 관할 지방경찰청장 및 지방국토관리청장 등과 협의하여야 한다.

제11조(자전거주차장의 설치·운영)① 「주차장법」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설치하는 노외주차장과 동법 제12조의3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단지조성사업등으로 설치되는 노외주차장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일정비율 이상의 자전거주차장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노외주차장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주차장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시설물을 건축 또는 설치하고자 하는 자 및 「주택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주차장을 설치하여야 하는 주택단지등의 사업주체에 대하여 자전거주차장의 설치를 권장할 수 있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자전거주차장의 관리·운영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범위안에서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제20조(자전거의 무단방치금지)①누구든지 도로 기타 공공장소에 자전거를 무단으로 방치하여 통행을 방해하여서는 아니된다.

②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을 위반한 자전거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동·보관·매각 기타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제22조(자전거의 등록) 자전거를 보유하는 사람은 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장(구가 설치되어 있지 아니한 시에 한한다)·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자전거를 등록할 수 있다.

□ 시 행 령

제2조(자전거이용시설의 정의) 법 제2조제1호에서 "자전거의 이용과 관련되는 시설"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시설을 말한다.1. 자전거횡단도·자전거신호기 및 자전거교통안전표지(자전거의 교통안전에 필요한 주의·규제·지시·안내등을 표시하는 표지판 및 도로의 바닥에 표시하는 기호나 문자 또는 선등의 노면표지를 말한다)

2. 자전거이용자의 안전을 위한 방호울타리·방호경계턱등 자전거이용자의 안전을 위한 시설

3. 자전거의 주차 및 잠금장치를 위한 시설물(이하 "자전거주차장치"라 한다)

4. 자전거이용자의 휴식소 또는 자전거이용자를 위한 야영장등 기타 자전거이용자의 편의를 위한 시설

제7조(자전거주차장의 설치)①법 제11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율"이라 함은 노외주차장 총면적을 기준으로 하여 그 100분의 5를 말한다.②자전거주차장에는 자전거주차장치를 설치하여 자전거이용자가 안전하고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게 하여야 한다.

제8조(자전거주차장의 설치제외) 법 제11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한 노외주차장"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노외주차장을 말한다.1. 자동차전용도로(고속국도를 포함한다)만으로 연결된 곳 또는 도시의 중심 지역등으로서 시장(구가 설치되어 있지 아니한 시에 한한다. 이하 제10조 및 제11조에서 같다)·군수·구청장이 자전거의 이용이 불합리하다고 인정하는 지역에 설치된 노외주차장

2. 급경사 또는 자전거의 이용이 제한된 지역에 설치된 노외주차장

제9조(자전거주차장의 운영) 법 제1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조례에는 다음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자전거주차장의 설치·유지관리에 관한 사항

2. 자전거주차요금에 관한 사항

3. 자전거주차장의 운영방법등에 관한 사항